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한국재정정보원</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기간</td><td>2025.07.28
~
2025.11.21
(기간 중 2개월)</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7">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e나라도움(기능개선)</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5.04.24 ~
2025.12.20</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1) 국고보조금에 관한 모든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 및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구축하였으며, ‘17.7월 전면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임
2)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기능개선에 대한 요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및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기능개선 과제에 대해 안정적 추진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 여부</td><td colspan="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각 요건 중 ④에 해당
① 5만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② 5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③ 10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④ 기존에 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88백만원
(부가세포함)</td></tr>
<tr><td>추진 주체</td><td colspan="3">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 관리단)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td></tr>
<tr><td>추진 근거</td><td colspan="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5영역 신기술은 사용하지 않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1) 보조사업 업무처리 및 사업관리 편의 기능개선
2) 규정에 입각한 보조금 사용을 위한 기능개선 및 관리기능 구현
3)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로그인 인증서비스 확대</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기구축되어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매년 변경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e나라도움 기능개선 사업” 범위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분으로 평가범위를 정함</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이용자정보*</td><td>759,012</td><td>(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E-Mail
(선택)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유형, 본인인증정보, 소속기관, 소속기관유형, 소속부서, 소속기관주소, 소속기관명, 대표이메일, 일반과세자여부, 직위, 팩스번호, 전자결재ID(온나라), dBrain_ID, IP, 인증서정보, 핸드폰단말기ID, 나이, NI</td><td>제3자 제공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0조의2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온나라시스템)
제공목적 : 온나라시스템 연동 및 결재문서 수발신
제공항목 : 이름, 전자결재ID(온나라)</td><td>이용자 관리</td></tr>
<tr><td colspan="4">* “이용자정보”는 기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로 2025년 기능개선 사업에서 개인정보 NI(Any-ID값)을 신규로 추가함</td></tr>
<tr><td>기타 개인정보파일</td><td colspan="4">기 운영 중인 e나라도움 15개 개인정보파일 중 4개의 파일은 2025년 기능개선 사업 일부 신규 작성 화면 변경 화면에서 단순 조회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대상 파일] 사업수행관리정보, 거래처정보, 부정수급자정보, 수급자통합정보</td></tr>
<tr><td rowspan="4">영향평가기준</td><td rowspan="3">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구분</td><td colspan="3">주요 내용</td></tr>
<tr><td>지표추가 항목</td><td colspan="3">2.4.1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2025년 9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름)</td></tr>
<tr><td>지표변경 항목</td><td colspan="3">없음</td></tr>
<tr><td>지표삭제 항목</td><td colspan="3">5영역(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에서는 특정 IT기술을 활용하지 않음</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colspan="4">- 매년 기능개선 시 추가 또는 변경되는 기능부분에 대하여 관련있는 영향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또한 2025년 9월 5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와 2025년 10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 영형평가 안내서」에 따라 변경,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함</td></tr>
<tr><td>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 colspan="4">e나라도움(기능개선)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파일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부분 모두 양호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는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유기간 산정(3.2.1) 및 파기계획 수립(3.5.1)에서 개선사항이 식별됨

e나라도움(기능개선)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 대부분 양호하나 개인정보 표시제한 규칙 준수(4.8.2)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td></tr>
</table>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미이행" 또는 "부분이행"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단기 개선(3개월 이내): 2025. 11. ~ 2025. 12. - 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인 이용자정보와 관련 되어 신규 생성되는 부속 테이블(파일)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파기정책을 구체화하여야 함 중기 개선(12개월 이내): 2025. 11. ~ 2026. 11. - 일부 화면의 개인정보 표시방법을 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 표시제한 매뉴얼" 마스킹 규칙을 준수하여 보완하여야 함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불필요한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산정된 보유기간에 맞는 파기정책 실현 - 표시규칙(마스킹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타인에 의한 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스킹 규칙 준수
평가결과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에서 모두 양호하였으나,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서 단기 개선 침해요인이 2건 도출되었으며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서 중기 개선 침해요인이 1건 도출됨 따라서 위에서 도출된 침해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